

문서번호	교통행정과-20852
결재일자	2016.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장		
윤춘선	서원옥	이상수	05/13 김화복		
협 조					

2016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2016. 5.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2016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의 홍보를 활성화 하고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와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함

I

관련법령 및 추진개요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1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개요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간 : 전년도 8. 1 ~ 당해연도 7. 31
- 부과기준일 : 당해연도 7. 31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당해연도 10. 16 ~ 10. 31
- 산정기준 : 시설연면적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20년까지 면적별로 최대 2,000원까지 부과
 - 교통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10.92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요

-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연면적 1,000㎡ 이상)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0~30% 경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0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 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주차유도시스템,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기타

- 이행점검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 확인
 - 3,000㎡미만 : 반기별 1회이상 / 3,000㎡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내용 : 참여 시설물주가 제출한 교통량 감축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 ※ 감면방법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에 따라 경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II '15년 추진성과

■ 이행점검 강화로 이행시설수 감소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감소

- '15년도 이행률 67.5%, '14년 대비 3.9% 감소

구분	대상시설(a)	신청시설(b)			이행시설(c)		
		시설수	신청률(b/a)	전년대비	시설수	이행률(c/b)	전년대비
2015년	261	83	31.8%	△0.3%	56	67.5%	△3.9%
(2014년)	(261)	(84)	(32.1%)	-	(60)	(71.4%)	-

- '15년도 평균 경감률 23.1%, '14년 대비 2.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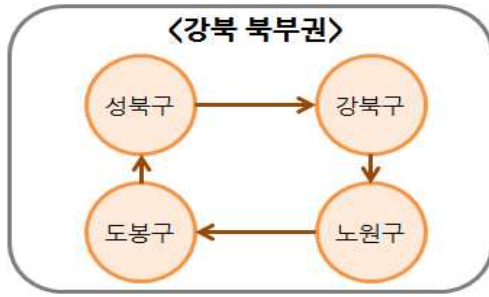
경감률	10% 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 이상
'15년	5개	6개	32개	10개	4개	1개	0개	0개
('14년)	(7)	(10)	(34)	(1)	(5)	(2)	(0)	(1)

III '16년 운영계획

■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및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이행점검 강화

- 점검대상 : 구청사 및 교통유발과다시설물
- 점검시기 : '16년 4분기(5~7월 중)
- 점검방법

- 구청사 : 동일 권역 내 타 구청사 이행점검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 경감심의위원회, 민관 거버넌스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 대규모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집중관리

- 관리대상 : 관내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과다시설물
- 관리방법
 - 공공기관(경찰서 포함), 지역단체(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협회 등), 시설물 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 정기적인 교통현황 모니터링 및 민관 합동회의 등을 개최하여 혼잡완화 방안 마련
 -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개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홍보 강화
 - ⇒ 시설물의 자발적인 노력과 성과 없을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추진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 전개

- 매월 네 번째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강화
 - 관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적극 홍보
 -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제한(폐쇄)으로 효과 극대화
 -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이용 제한 추진
 - 더 나아가 일반인 대상 주차장 이용 제한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으로 민간시설물 주차장 이용폐쇄 적극 유도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기타에 포함(월 1회 운영기준 5%(≒12회/260일) 감면)
- 시민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축제 등 이용(홍보부스 운영, 체험행사 개최, 대중교통 이용 서약 등)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 홍보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설 및 정비

○ 정비내용(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프로그램	경감률	개정안 프로그램	경감률
<신 설>	-	[나눔카 이용]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 ◦나눔카 이용금액의 50%	10%
[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 1시간 이내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기준 - 10%(≥100%), 15%(≥110%) 20%(≥120%), 30%(≥130%)	30%	[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시간 없음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기준 - 10%(≥80%), 20%(≥100%) 30%(≥130%)	동일
[주차장 축소] ◦주차면수 축소비율에 따라 경감 (당해연도 포함 3년까지 경감) ◦주차면수 “0” 인 경우, 20% 경감	20%	[주차장 축소] ◦좌동 ◦주차상한제 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 ◦주차면수 “0” 인 경우 (단 3천㎡ 이상 시설에 한함)	동일 30% 50%
[주차유도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운영 (당해연도만 경감)	1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운영 및 정보제공(당해연도만 경감)	동일
[유연근무제] ◦대상 : 종사자 100인 이상 ◦종사자 30% 이상이 시차출근 참여(1시간 이상 차이), 스마트워크근무, 재택근무 실시 ◦1시간 차마다 10%씩 경감	20%	[유연근무제] ◦대상 : 종사자 50인 이상 ◦종사자 30% 이상이 시차출근 참여(1시간 이상 차이), 스마트워크근무, 재택근무 등 실시 ◦10%(종사자 30% 이상 참여) 15%(종사자 40% 이상 참여) 20%(종사자 50% 이상 참여)	동일
[업무택시제] ◦실제 사용금액 경감	20%	[업무택시제] ◦실제 사용금액의 50%	동일

○ 시행시기 : '16.8.1(예정)

IV

추진일정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수립·제출 : '16. 5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조사 실시 : '16. 7월
- 기업체 대상 교통수요관리 전체 설명회 개최 : '16. 7월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 개최 : '16. 9월
-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16. 10월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평가자료 제출 : '16. 11월